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3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. .  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2. 1. 13.字 전부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으로, 우리 구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후생복지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 정의 및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문 정비(안 제2조)
- 나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맞춰 위원회 규정 정비(안 제8조)
- 다. 의회 후생복지 제도의 안정적인 확립을 위한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협의규정 신설(안 제13조)
- 라.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12. 16. ~ 2022. 1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·구의회사무국(구의원 포함)·보건소·동 주민센터”를 “본청·보건소·동 주민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무원에게”를 “공무원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장애인공무원”이란”을 ““장애인 공무원”이란”으로,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항”을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중증 장애인공무원”이란”을 ““중증장애인 공무원”이란”으로, “장애인공무원”을 “장애인 공무원”으로,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항”을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“장애인공무원”을 각각 “장애인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”를 “이 조례는 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각각 “소속 공무원”으로, 같은

항 중 “노력 하여야”를 “노력하여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소속공무원 등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“각 호”를 “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위촉하는 사람으로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중증 장애인공무원”을 “중증장애인 공무원”으로, “장애인공무원”을 “장애인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 제3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3항”으로,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”를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”로,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장애인공무원”을 “장애인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복지제도의 통합 운영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과

협약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속 공무원”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<u>본청 · 구의회사무국(구의원 포함) · 보건소 · 동 주민센터</u>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란 <u>공무원</u>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</p> <p>4. “<u>장애인공무원</u>”이란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「<u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</u>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5. “<u>중증 장애인공무원</u>”이란 소속 <u>장애인공무원</u>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본청 · 보건소 · 동 주민센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공무원</u> <u>이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“<u>장애인 공무원</u>”이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</u>」 제2조제1호----- -----.</p> <p>5. “<u>중증장애인 공무원</u>”이란----- -----<u>장애인 공무원</u>----- -----</p>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 
활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 
자를 말한다.

6. “근로지원인”이란 장애인공  
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 
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  
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
을 말한다.

7.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(이하  
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이라 한다)  
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  
방,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  
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  
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 
보조용품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구 소속 공  
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 
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 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
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 
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제8조에 따른 구 후생복지운  
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  
다)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 
활법」 제2조제2호-----  
-----.

6. ----- 장애인 공  
무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7. -----  
-----  
-- 장애인 공무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구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서울특별시 성  
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---

람

③ (생략)
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

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5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

① (생략)

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·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제8조(위원회) ① 구청장은 후생

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.

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

① ----- 소속 공무원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소속 공무원-----  
-----  
노력하여야 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소속 공  
무원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  
지운영위원회 -----.

제8조(위원회) ① -----

-----  
-----서울특별시 성동구  
후생복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  
회”라 한다)-----.

② (생략)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1조(근로지원인의 배정·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범위 등) ① 중증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으며,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

④ -----  
-----  
-----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-----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근로지원인의 배정·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범위 등) ① 중증장애인 공무원----- 장애인 공무원에게는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 제3항----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----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

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밖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설>

관한 법률」 제4조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장애인 공무원 -----

-----  
-----.

④ ----- 따라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시행규칙) -----

-----  
-----.

제13조(복지제도의 통합 운영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

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  
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 
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  
영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3. 미첨부 사유

-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상위 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

4. 작성자

- 총무과 행정8급 최윤서(02-2286-5104)

## < 관 계 법 규 >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0., 2021. 10. 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5. 5. 18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[시행일: 2022. 1. 21.]